

=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1. 16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11. 20

다. 상 정 일 자 : 제153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('07.12.2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최삼립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우리구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,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평생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
 - 협의회는 20명 이내, 실무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
 - 평생학습기본계획수립 및 지원, 프로그램 및 정보교류 지원 등
-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설치
 - 평생학습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사 등 위촉가능
 - 평생학습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수행
- 학습참여자와 학습단체 · 시설 등에 운영비 등 예산지원가능
-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프로그램 운영시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징수가능

3. 관계법령

- 평생교육법 (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본 조례안은

우리구 구민 모두가 언제,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식과 인재가 풍부한 경쟁력있는 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으로

나. 적법성 측면에서는

-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법명변경이 되면서 동법 제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하도록 명시적 규정이 있고
- 동법 제11조 등에는 평생교육 진흥경비의 지원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어
본 조례안의 내용은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음.

다. 타당성 측면에서는

- 사회구조가 다양화, 전문화 되면서 주민들의 학습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교육기관은 대학, 자치단체, 사설교육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학습기관간 연계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수강료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평생학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.
-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76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
(부산은 3개구 지정 : 해운대구, 연제구, 사상구)

부산시에서도 2007. 11. 12 「부산지역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선포식」을 가진바 있음.

-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이번 우리구의 평생학습 지원조례안은 조례제정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짐.

라. 재정적 측면에서는

- 평생학습센터 운영, 관련단체 지원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만 되면 3년동안 매년 2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참고로,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준은 「비전과 목표, 사업내용」 등과 함께 「조례제정 여부, 협의체구성 여부, 전담조직과 인력확충 여부」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임.

5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의결

붙임 : 수정안 대비표

**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
수정안 대비표**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③ 구청장은 학계, 시민단체, 기업체, 문화·예술 단체 등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.	제4조(구성 및 임기) ③ 구청장은 사하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과 학계, 시민단체, 기업체, 문화·예술 단체 등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.

※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